

2018 학년도

장곡행복학교 실현을 위한
학부모총회와 학교설명회

janggok happy school project 2018



장곡초등학교
<http://www.jang-gok.es.kr/>

Contents

I. 장곡교육의 기본 방향

1. 2018 학부모총회와 학교설명회 일정표	1
2. 장곡초등학교의 교훈과 상징, 비전	2
3. 꿈 · 사랑 · 배움 이 펼쳐지는 행복한 학교 실현	3
4. 2018학년도 학사일정	4

II. 세부 내용 및 연수 자료

♣ 반부패 청렴교육(불법찬조금 근절과 청탁금지 청렴)	5
♣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 학습 ..	7
♣ 2017 3월부터 달라진 전출 절차 안내	9
♣ 2018 혁신공감학교 운영	10
♣ 공교육정상화법 연수 자료	11
♣ 2018학년도 학생평가	12
♣ 2018 인성교육 기본 계획	15
♣ 학교생활인권 규정 운영 및 단계별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17
♣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20
♣ 가정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22
♣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24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25
♣ 인터넷 중독 예방	30
♣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31

▣ 일 시 : 2018. 3. 16(금) 14:00 - 16:40

▣ 장 소 : 2층 다목적실(4~6학년 학부모님) 및 각 교실(1~3학년 학부모님)

▣ 대 상 : 1~6학년 학부모님

▣ 일 정

시 간	내 용	담당	장소	비 고
13:4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각 교실앞에서) • <학교의 변화, 그 궁금한 이야기> 동영상 시청(각교실) 	담임교사 학년부장	다목적실 및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부는 학년부장 취합 후 교무실로 제출 • 교실에서 등록 한 후 4~6학년 학부모들만 2층 다목적실로 이동함
14:00 ~ 14:50	<p>1부 학교 교육 설명회 (학교 소개 및 학부모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개회 • 국민의례 • 학교장 인사 말씀 • 2018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안내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정립 연수 • 학사일정 및 장곡교육과정 안내 • 공교육 정상화법 연수 • 학생생활인권규정안내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연수 • 1부 폐회 <p>2부 학부모 총회 (학교 운영 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개회 •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과 결산 보고 • 학부모회 규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인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2부 폐회 	교무부장 손상옥 학교장 교감 교감 유재광 송정희 김정애 학교전담경찰관 교무부장	다목적실 및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학년 학부모는 다목적실에 입실 • 1~3학년 학부모는 각 교실에서 TV로 시청 • 경선이 되어 투표를 할 경우에는 2층 과학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당선 확정된 학부모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장과의 상견례에 참석 (과학실, 16:20~16:4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학부모회 대의원 모임에서 선출하도록 함 (학년대표 6명이 위원임)
14:50~ 15:50	<p>• 3부 담임교사와의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운영 안내 - 학급별 학부모지원 단체 조직 및 학급 대표 (학부모회대의원) 선출 	담임교사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에서 조직된 학부모 지원단체 명단을 작성하여 학년부장 취합 후 담당교사에게 제출 • 15:50 학부모 지원 단체 임원 선출을 위해 담당교사의 교실로 이동 안내
15:50~ 16:20	<p>• 4부 학부모 지원 단체 임원 선출</p> <p>환경미화지원단 : 홍주호(5층 5-4) 교육활동지원단 : 임민영(3층 3-4) 독서지도지원단 : 이금주(1층 도서실) 생활안전지원단 : 오복연(2층 음악실) 교통안전지원단 : 이진중(4층 5-2) 급식모니터요원 : 박현영(2층 과학실) 학부모회 대의원(학급대표) : 조석환(3층 2-6)</p>	담당교사	해당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에서 학부모 지원 단체에 가입하신 모든 학부모님은 5-4(5층), 3-4(3층), 도서실(1층), 음악실(2층), 5-2(4층), 회의실(1층), 2-6(3층)로 이동하여 단체별 임원진 구성 • 단체별 임원은 16:20까지 과학실로 이동
16:20~ 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과의 상담 • 학교장과의 상견례(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원단체 임원) • 학부모 협조 통합위원회 조직 	담 임 교감,교장 교무부장	학급교실 과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별상담은 학부모상담주간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2 장곡초등학교의 교훈과 상징, 비전

교훈	실력 · 끈기 · 예절
비전	더불어 성장 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 한 어린이
미션	꿈 · 사랑 · 배움 이 펼쳐지는 행복한 학교 실현

교목 : 은행나무 	교표 	교화 : 장미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사라라는 의미	무궁화 모양으로 무한한 우주를 향해 큰 꿈을 품고 전진하는 장곡어린이의 꿈을 상징함	아름답고 양기가 흐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





4

2018학년도 학사일정

3월 (21일)							4월 (21일)							5월 (20일)							6월 (19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1	2	3	4	5	6	7			1	2	3	4	5						1	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31	29	30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table border="1"> <tr><td>2(금)</td><td>시업식, 입학식</td></tr> <tr><td>9(금)</td><td>1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td></tr> <tr><td>16(금)</td><td>학교설명회(학부모총회)</td></tr> <tr><td>3.19~3.23</td><td>1학기 학부모상담주간</td></tr> </table> <p>■삼일절: 3.1</p>							2(금)	시업식, 입학식	9(금)	1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	16(금)	학교설명회(학부모총회)	3.19~3.23	1학기 학부모상담주간	<p>■학교개교기념일: 4.22</p>							<table border="1"> <tr><td>5.19~5.22</td><td>사계절방학(봄-4일)</td></tr> <tr><td>25(금)</td><td>학부모 공개수업</td></tr> </table> <p>■학교장재량휴업일: 5월 21일 ■어린이날: 5.5 ■대체휴일: 5.7 ■석가탄신일: 5.22</p>							5.19~5.22	사계절방학(봄-4일)	25(금)	학부모 공개수업	<p>■현충일: 6.6 ■2018 지방선거: 6.13</p>												
2(금)	시업식, 입학식																																												
9(금)	1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																																												
16(금)	학교설명회(학부모총회)																																												
3.19~3.23	1학기 학부모상담주간																																												
5.19~5.22	사계절방학(봄-4일)																																												
25(금)	학부모 공개수업																																												
7월 (19일)							8월 (8일)							9월 (16일)							10월 (21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1	2	3	4							1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29	30	31					26	27	28	29	30	31		23/30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table border="1"> <tr><td>13(금)</td><td>2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td></tr> <tr><td>20(금)</td><td>2학기 학생자치회임원 선출</td></tr> <tr><td>26(목)</td><td>여름방학식</td></tr> <tr><td>7.27-8.21</td><td>여름방학기간(26일)</td></tr> </table> <p>■1학기 총 수업일수: 100일</p>							13(금)	2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	20(금)	2학기 학생자치회임원 선출	26(목)	여름방학식	7.27-8.21	여름방학기간(26일)	<table border="1"> <tr><td>22(수)</td><td>2학기 시업식</td></tr> </table> <p>■광복절: 8.15</p>							22(수)	2학기 시업식	<table border="1"> <tr><td>9.21~9.26</td><td>사계절방학(가을-6일)</td></tr> <tr><td>9.17~9.20</td><td>2학기 학부모상담주간</td></tr> <tr><td>14(금)</td><td>갯골사랑 환경사랑이야기</td></tr> </table> <p>■학교장재량휴업일: 9.21 ■추석명절: 9.23-25 ■대체휴일: 9.26</p>							9.21~9.26	사계절방학(가을-6일)	9.17~9.20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	14(금)	갯골사랑 환경사랑이야기	<table border="1"> <tr><td>10.17~10.18</td><td>갯골 과학 페스티벌</td></tr> </table> <p>■개천절: 10.3 ■한글날: 10.9</p>							10.17~10.18	갯골 과학 페스티벌
13(금)	2학기 학급자치회임원 선출																																												
20(금)	2학기 학생자치회임원 선출																																												
26(목)	여름방학식																																												
7.27-8.21	여름방학기간(26일)																																												
22(수)	2학기 시업식																																												
9.21~9.26	사계절방학(가을-6일)																																												
9.17~9.20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																																												
14(금)	갯골사랑 환경사랑이야기																																												
10.17~10.18	갯골 과학 페스티벌																																												
11월 (22일)							12월 (20일)							2019년 1월 (3일)							2월 (0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1			1	2	3	4	5						1	2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23/30	24/31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table border="1"> <tr><td>28(금)</td><td>2019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td></tr> </table> <p>■성탄절: 12.25</p>							28(금)	2019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table border="1"> <tr><td>4(금)</td><td>2019 신입생예비소집일</td></tr> <tr><td>4(금)</td><td>종업식, 졸업식</td></tr> </table> <p>■새해 첫날(신정): 1.1</p>							4(금)	2019 신입생예비소집일	4(금)	종업식, 졸업식	<table border="1"> <tr><td>1.5-2.28</td><td>학년말방학(55일)</td></tr> </table> <p>■설날명절: 2.4-6 ■2학기 총 수업일수: 90일</p>							1.5-2.28	학년말방학(55일)																	
28(금)	2019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4(금)	2019 신입생예비소집일																																												
4(금)	종업식, 졸업식																																												
1.5-2.28	학년말방학(55일)																																												
■ 공휴일 , ■ 학교장재량휴업일																																													
수업 일수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재량휴업일수	총수업일수	비고(무급식일 3일)																																		
		21	21	20	19	19	0	100	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재량휴업일수																																				
2학기	8	16	21	22	20	3	0	90	1	190	시업식,입학식(3/2) 여름방학식(7/26) 종업식,졸업식(1/4)																																		

반부패 청렴교육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탁 금지 청렴]

1.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학부모 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집행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5

2. 청탁 금지법 및 청렴 학교 안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28)

적용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적용대상 기관의 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및 금품 등의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징계 및 벌칙

구분	제재수준	비고
부정청탁 금지	- 2년 이하 징역 -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청탁유형별 별도 제재기준 적용
금품등 수수 금지	-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5백 만원 이하 과태료	- 1회 백만원 또는 연 3백만원 초과 수수(직무관련 여부 관계 없음) - 1회 1백만원 이하 수수(직무관련)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NEW 청렴문화 조성

가.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방문하기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없이 학부모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불필요한 선물 등을 주고 받는 문화의 근절

- 인사철, 스승의 날, 명절, 떡 돌리기 등 관행을 그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를 근절하여 금품수수 금지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등 산호간 신뢰에 기초한 감사의 마음만 주고 받는 문화 조성

‘부정청탁 신고’ 보호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 학습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방침)

- ①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제 3조(학습 형태)

- ① 가족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견학활동
- ④ 체험활동
- ⑤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①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여행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결과 처리)

- ①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 동안 보관한다.

<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안내 >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을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 연간 20일 이내	홈페이지 공지 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보고서 제출 쪽수 1매 이상으로 한다.	홈페이지 공지 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해당 학년도)	

2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운영 방침

가.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 (**6개월 이내, 공휴일 및 방학기간 포함**)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 후 실시한다.

다. 위탁 학교장은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3

시행절차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종류	내용(예시)	절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 출석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학교와의 교환·교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의 신청<서식 3>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업무관리시스템)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의뢰서<서식 4> 송부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교류학습 실시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 <서식 5>

< 결석종류별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정리 >

결석종류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비고	
출석 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안발생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사안별 법정 인정기간 안내를 받아야 함 * (증빙서류 첨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연간 10일 이내 인정 - 허가기간 초과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
	2.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사안발생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연락 ·사후에 학부모가 증빙서류를 제출	
	3.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부모가 3일전까지 신청서(학교홈페이지) 제출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담임교사가 허가 여부 통보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	·사안발생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가 내부결재 를 득해야함	
질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	1~2일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안발생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연락	* 결석계와 증빙서류 를 꼭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부모가 증빙서류와 결석계 를 제출	
무단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유선연락, 가정방문, 경찰에 수사의뢰, 학생과 함께 보호자 내교 요청 등 무단결석에 대한 처리가 강화되었으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018 혁신공감학교 운영

- **목적** :
- 자치공동체,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학교 문화 혁신
 -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학교 문화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수업 실현
 - 활기찬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

□ **추진 전략**

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전략	비고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① 혁신 적인 생각을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학교문화)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학교의 문제를 성찰하여 해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여 학교 철학 정립, 공유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짐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민주학교
	② 신 나는 만남이 있는 학습공동체(교실문화)	교실에서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치유와 안정을 가져와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안전학교
	③ 공유 와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공동체(교직원문화)	교육과정의 공동연구·공동실천으로 개별 교사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혁신학교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	④ 감동 과 배움이 있는 장곡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고 구성원의 반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함	체험과 실천의 학생 중심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행복학교
	학교 와 학생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 - 행복학교 만들기(학교평화 프로젝트)		자율·선택과제

□ **학교의 비전 및 철학**



공교육정상화법 연수자료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나.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2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시행단위	용어	내용
초·중· 고등학교	선행 교육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3 학교의 책무

- 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 나.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생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 다.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연수 실시
 - 자체점검단(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에서 학기당 1-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원 연수에 그 결과를 반영
 - 교과 교육활동 수립 전에 전체 교원 연수 실시
- 라.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4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예외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방과후 학교 한시적 적용(중, 고등학교)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2018학년도 학생평가

1 교과 활동 평가

구분	평가 내용	평가 횟수	평가 대상	평가 시기	비고
수행 평가	수행평가	수시	1~6학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전·중·후 담임교사 실시 •학급별 실시(1학년은 논술형 평가를 2학기부터 실시) •기존 교사별평가(논술형 평가) 포함
	정의적능력 평가	학기별 1회	1~6학년	연중	학급별 실시 (국,사,수,과)
	진단평가	연 1회	2~6학년	3월	학급별 실시

가. 진단 평가

- 1) 전학년도의 학습 능력을 학기 초에 실시하여 학습 부진의 원인을 미리 찾기 위함이다.
- 2) 시기와 범위는 평가 방법 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 3) 학습 부진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 4)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으로 하며, 학급 단위로 실시한다.
- 5) 진단평가는 1회(3월)로 한다.
- 6) 기초학습부진아 검사 및 평가는 4회 (3,6,9,12월)로 한다.

나. 교사별 평가

- 1) 평가 시기 - 학습 과정 중 담임 재량으로 수시로 실시한다.
- 2) 평가 교과 - 1~2학년 : 국어, 수학, 통합(바슬즐), 안전한 생활
 3~4학년 :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6학년 :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3) 평가 방법
 - 담임 교사가 수업 목표 도달도 정도를 파악한다.
 - 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동학년 협의를 거쳐 학급 담임이 선택하여 실시한다.
 - 평가 내용 및 방법과 시기는 동학년 협의에 의하여 기준안을 작성 활용한다.
 - 각 학년별, 교과별, 영역별 평가 기준에 의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 누가 기록한다.
 - 수행평가는 논술식, 서술식, 서답형, 관찰, 일화기록, 자기평가, 실형, 면접법, 토론,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동학년 협의 하에 담임 재량에 의하여 평가한다.
 - 행동 및 수행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년 부장은 행동 관찰 및 수행 평가 기준표 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학급간의 격차를 최소화한다.
- 4) 결과 처리
 - 학습 도달도가 높은 학생에 대하여 심화, 발전 학습 내용을 과제 제시의 형태로 지도한다.
 - 학습 도달도가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학습 지도를 통하여 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평가 후 1주일 이내에 평가지를 가정에 배부 후 회수하여 학생 평가포트폴리오에 누가 철한다.

5) 영역별 수행 평가 항목

교과		영역										
1·2학년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수학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통합(비율)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전한 생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3·4학년	도덕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수학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지역의 어제와 오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과학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체육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음악	표현			감상			생활화				
	미술	체험			표현			감상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도덕	도덕적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5·6학년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수학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사회	지리영역			일반사회영역			역사영역				
	과학	지식					탐구					
	체육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 지구		탐구 과정		탐구 활동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기활동		
	음악	표현							감상		생활화	
	미술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체험				표현			감상			
	실과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태도			

※2018학년도 수행평가 항목은 1~4학년(2015 개정교육과정), 3~6학년(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적용함.

라. 정의적 능력 평가

1) 개념

- 정의적 능력이란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을 의미
- 그동안 인지적 능력에 치우친 평가를 참된 학력과 인성교육까지 관심을 두는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2) 대상 : 1~6학년

3) 교과 : 1~2학년 국, 수 / 3~6학년 : 국, 사, 수, 과

4) 평가 시기 : 학기별 1회

5) 평가 내용

- 정의적 평가는 문항 또는 설문지형으로 평가하되, 지필 및 수행평가에는 미반영.
- 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평가 결과 기록
- 학기별 1회 정의적 능력 영역별 평가를 학년 협의에 따라 실시
- 정의적 능력 평가 설문지를 실시하여 학생 상담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는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정보, 학생 상담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
- 평가 결과를 성적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며, 점수화하거나 서열화하지 않음
- 학생들에게 평가 자료를 투입할 때 평가지의 제목은 학생들이 일반 지필평가로 인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급의 특색에 따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적용
- 평가계획, 평가지, 평가 결과 등을 가정에 통지하지 않음

2 상의적 세업활동 평가

가. 평가 방법

구분	평가 방법	평가 요령
활동 상황의 관찰	일화 기록법	학생의 활동 상황을 자유롭게 수시로 기록하여 평가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법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상황 등을 미리 준비된 리스트에 의거하여 체크하는 방법
	평정척도법	관찰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활동을 일정한 척도에 맞추어 평정하는 방법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의식 태도 조사	활동에의 생각, 흥미, 관심, 태도 등을 설문식으로 조사하는 방법
	자기 평가	집단 활동의 참가 태도, 행동의 정착도를 학생 스스로가 반성,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
	상호 평가	학생 상호 간의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 공동으로 산출한 결과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
학생의 작품과 기록	작품 평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활동의 기록 분석법	활동의 계획이나 활동의 과정을 실제 기록하도록 한 것을 분석하는 방법
	작문, 소감문 분석법	활동의 계획, 실시에 대한 의견, 참가 후, 활동 후의 감상 등을 글로 쓰도록 하거나 활동하는 동안의 일지를 분석하는 방법
교사 의견 교환	교사 협의	활동 영역별 지도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나. 평가 결과 활용

- 1) 학생의 성취 수준 확인
- 2) 학습의 진단과 치료 자료로 활용
- 3) 생활지도, 진로지도, 능력별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4) 교수·학습 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5) 교육과정, 학습지도의 반성과 개선 자료로 활용

3 행동발달상황 평가

가. 행동 발달사항 영역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관점
규칙준수	·학교교칙준수·실내정숙·좌측통행 ·공중도덕·수업준비·행사질서	·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는가 · 규칙을 잘 지키는가? · 남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도록 권유하는가?
청결 질서	·청소활동·출석상황·예습복습 ·자습, 휴식시간활용·정리정돈	· 여러 가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가? · 여러 가지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는가? ·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가?
배려	·당번활동·역할분담·과제학습이행 ·수집활동, 봉사활동	· 자기가 할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가? ·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 남을 돕는 생활을 실천하는가?
갈등관리	·학급회활동·학습활동·행사활동	·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가? · 자기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의견을 받아들이는가? · 친구들과의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가?
협력 나눔	·친구관계·학우 돕기·청소활동 ·학급회의활동·봉사활동·집단활동	· 남의 일을 즐겨 돕는가? · 집단 활동에 즐겨 참여하는가? · 집단이 결정한 사항을 지키는가?
타인존중	·인사성·용의단정·고운말 쓰기 ·식사에절·감사하는 태도	· 고운말을 사용하는가? · 친구와 웃어른께 인사를 잘 하는가? · 예절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가?

2018학년도 인성교육 기본 계획

더불어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목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인성교육의 개념

- 학생 개개인의 수양과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중심의 인성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성과 결합된 인성교육으로 공공선과 공익에 부합하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스스로 경험하여 체득할 수 있는 시민적 인성 교육

□ 존중과 배려의 생활교육공동체 실천

● 존중과 배려의 대화문화

- 교사 : 학생 이름 부르며 경어 사용하기
- 학생 : 욕설, 비속어 쓰지 않고 존중어, 바른 언어 사용하기 실천

● 학생과의 친밀한 사랑이 넘치는 아침 실천 활동

- 따뜻한 교문 맞이하기(학교장), 따뜻한 교실 맞이하기(담임, 8:40~9:00)

● 공동체 약속 실천

- 학급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약속 만들고 실천하기(학급 회의, 전교 어린이회의, 대토론회 학생 참여), 전교생 명찰달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

● 공감과 치유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년별 친구사랑의 날 운영
-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전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실시(3~6학년)
- 학급규칙만들기(3월 30일)
- 학교폭력 STOP 운동 및 3.3.2 프로그램 운영

□ 질서의 생활화

● 한 줄 서기 운동전개

● 교통안전 질서 지키기

● 학교 등하교시 통학로로 다니기(안전상 운동장으로 통행함을 지양)

□ 친절의 생활화- 바른 언어생활 문화 개선

● 바른 언어생활 문화를 통한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

-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실천

● 학생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10월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 인사 잘하기 운동 전개 - 각 학년별 인사말을 “안녕하세요?”로 통일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자치활동 추진 계획 수립

-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100만원)

● 학생자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주적 학생임원 선거 운영으로 자치기구로서의 독립성 보장(선거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 운영, 학생 자치회 회장은 선출직이므로 학교장 임명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

- 학생자치회 월1회 이상 실시(매주 넷째주 금요일)

- 학생자치회 주관 토크 콘서트(학생대토론회) 운영

-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 설치

-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만들기

● 2018 선거규정

- 학급임원: 3~6학년 대상, 학급당 회장1명, 부회장 1명 선출(임기 1학기)

- 전교임원: 임기 1학기, 전교 어린이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1명, 5학년 1명)

- 임명장 수여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으로 수여

□ 화목한 가정 만들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 '가족 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 교육을 하며,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의 시간 갖기

● 넷째 주 토요일은 효 체험의 날

- 매월 4주를 '효체험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에서 효 체험 활동 전개
- 「자녀-부모 대화의 날 운영」(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및 단계별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안내

1.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 10호)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

학교 규 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나.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의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며,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의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는 법규적 성격 ○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 ○ 자녀의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의 기준 ○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 ○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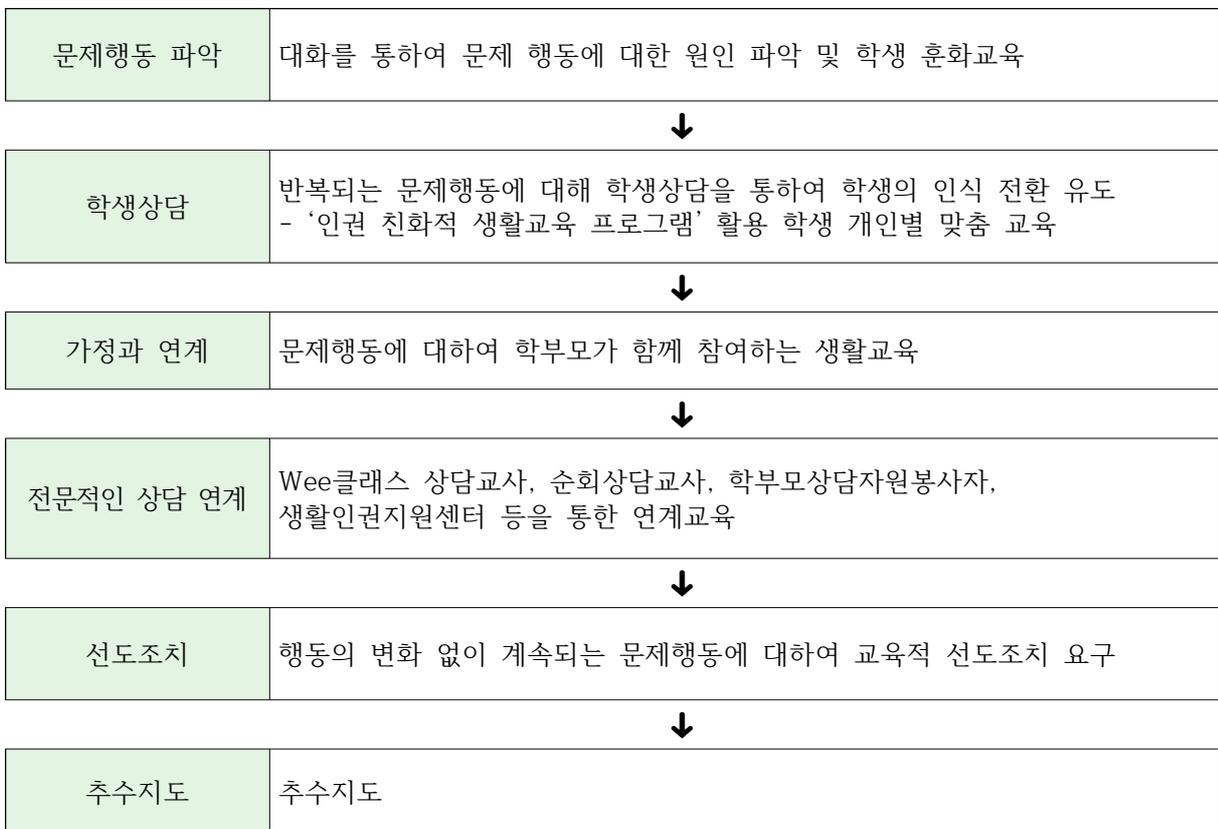
□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 목적

학생을 절제와 자정능력을 갖춘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 생활교육

- 통제와 지적의 학생지도에서 '상담과 대화'로 학생 생활교육 방법 개선
- 문제행동에 대해 교육적으로 상담과 대화를 통한 학생들의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
- 담임교사 및 전체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교육 실천 방안



○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적용

1단계 **약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 ■ 학생 간 기본예절 및 수업예절 교육 	<div style="font-size: 2em; color: #4caf50; margin-bottom: 5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 학교별·학급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재량활동)에 반영 ■ wee클래스를 통한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p>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지키기 캠페인 전개
--	--



2단계 약속준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약속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제공 ■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실시 ■ 필요 시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활용 ■ 비폭력 대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회복적 생활교육 ■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강화 ■ 상담기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학생 이해를 위한 상담안내 및 연계지도 방법 모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활인권지원센터, Wee센터 등
---	--



3단계 선도(징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 적용 (학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 ※ 중한 사안의 경우 '상위 단계' 징계 가능 ■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이해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뺨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 등 청소년 폭력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니까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실시

관련 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 14조제 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유한정(경벌)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가정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1. 가정폭력이란?

-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①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②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③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④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에선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라고 해요!

우리 전통에선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요!

우리 종교에선
남편에게 아내를 마구 대해도 된다고 해요!

탕탕탕
당신은
유죄입니다

"어떤 문화와 전통과 종교도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가정 내의 가정 폭력 예방 방법을 이용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1. 생명존중교육의 의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과 공존이 행복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관(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습관을 기르는) 교육”

2. 생명존중교육의 목표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 생명의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함양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와 공감 능력을 가진 공동체의 형성
- 너와 나, 우리와 타자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 모든 생명(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 환경위기와 생태적 부정(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환경을 부정, Ecological denial) 문화의 극복

3. 자살의 이해

1) 자살이란?

자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자살적 행위로 다양한 정도의 죽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기위해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WHO report, 2004)

2) 자살 고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가. 위험요인이란?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 | | |
|---------------------------------|-------------|
| ① 정신질환 | ② 자살시도의 과거력 |
| ③ 자살의 가족력과 부모의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질환 | ④ 발달적 외상 |
| ⑤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성(性)적 지향) | ⑥ 신체적 질병 |
| ⑦ 완벽주의적 성격,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 |

나. 보호요인이란?

자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 ①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심리사회적지지(애정 어린 관계, 높은 기대, 참여와 기여)
- ② 종교적인 믿음
- ③ 삶의 의미
- ④ 개인의 심리적 강점(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목적의식, 미래의식)

4. 대상에 따른 자살 특성

1) 청소년 자살

자살은 어느 연령층에서 일어나더라도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했을 경우 가족과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뒤르케임은 청소년기의 자살원인을 아노미(anomic suicide)로 보았다. 아노미에 의한 자살은 청소년이 갑자기 변화된 심리-환경적 상황 속에서 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2) 청소년의 위험신호는?

- | | |
|--------------------------------|-------------------------------|
| ① 친구관계의 어려움 | ② 혼자 또는 집단으로 하는 비행 |
| ③ 지속적 반항 또는 공격성 | ④ 담배, 술, 약물, 인터넷 등의 지나친 사용 |
| ⑤ 심한 걱정과 불안(예-지나친 시험불안) | ⑥ 짜증, 작은 화와 분노 폭발 |
| ⑦ 무단 결석, 잦은 지각, 가출 등 | |
| ⑧ 집중과 학업의 어려움(예-학교 성적의 뚜렷한 저하) | |
| ⑨ 입맛과 체중의 급격한 변화 | ⑩ 수면의 장애(예-과다수면, 불면증, 지속적 악몽) |

5.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 1) 기분 장애 - 평생의 15% 자살 위험
- 2) 공황 장애 - 평생의 7~15% 자살 위험
- 3) 정신 분열증 - 평생의 10%의 자살 위험
- 4) 알코올 중독 - 평생 3%의 자살 위험
- 5) 경계성 인격 장애 - 평생의 7%의 자살 위험

*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1) 경찰과 112

- ▷ 자살 시도자 응급대응에 효과적임
- 신속한 출동(112 신고하면 15분 이내 현장에 도착)
- 급박한 위험 제거(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 보호조치가 가능(긴급구호) : 24시간 보호, 임시영치 10일 가능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경찰의 긴급구호를 거절 할 수 없음
 - 무기, 흉기 등을 임시 영치 가능
 - 119구급대 이용 가능
- 2) 119구급대
 - ▷ 자살 시도자 응급대응에 효과적임 - 신속한 출동
 - ▷ 위치추적 가능
 - 신청 자격은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보호의무자 혹은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 됨
 - 시흥시의 경우에는 응급 시 119에서 대상자에게로 직접 위치추적은 가능 함.
 - ▷ 제3자 통화 시스템 (대상자+119+상담원)
 - ▷ 관할지역 외로 후송조치는 어려움
 - 경기도민을 서울시로 후송 등
- 3) 사설이송단
 - ▷ 공공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활약
 - ▷ 응급 이송 및 안전 확보에 효과적임
 - ▷ 계약되고 훈련된 이송단과 계약하여 운영하며 공공안전망과 협력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4) 동읍면사무소(주민센터)
 - ▷ 공공문서를 통해 대상자의 보호의무자 등 연락처 확보 시 협조 가능
 - ▷ 정부의 복지서비스 연계 (수급권 및 한계 수급권자 책정)
- 5) 의료기관
 - ▷ 시군구청장(응급입원 포함)에 의한 입원 가능

병원명	주소	전화	진료	시간
시흥성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왕동 2305-1 4,5층	031-433-4567	입원 및 외래치료	24시간 입원가능
우리성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왕동 2305-1 1,2,3층	031-433-4567	입원 및 외래치료	24시간 입원가능
시흥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야동 532-6	031-315-9114	입원 및 외래치료	24시간 입원가능
메디월드의원	정왕동 1736-2	031-499-1447	외래치료	입원불가
한사랑정신과의원	신천동 711-2 태종빌딩 402호	031-314-5830	외래치료	입원불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1.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목적



2. 아동학대의 정의

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고용주)를 의미한다.

나. 아동학대라는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와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인),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를 의미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가.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례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나.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례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다.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례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해(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라.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례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가.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

1) 훈육과 체벌

훈육 -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

체벌 -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

-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

2) 아동의 입장에서 본 체벌의 의미

■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다.

3) 체벌의 부작용

■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 체벌을 하는 성인의 감정이 격해져 아동의 뺨을 손이나 슬리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혹은 대걸레 자루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등 '사랑의 매'로는 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

1) 아동 중심의 양육 태도 갖기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한다.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준다.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한다.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다.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기울여 준다.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준다.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 전체 속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를 결정한다.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한다.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준다.
- 부모 자신의 긍정적, 낙천적, 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준다.

2) 자율적이고 일관된 부모의 태도 갖기

나의 양육 효능감 살펴보기(○, ×)

-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아이를 잘 도우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 나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 나는 일관성 있게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
- 나는 아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나는 다른 부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나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수용한 뒤에 자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

4. 아동학대에 대하여 버려야 할 편견

1)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

■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해야한다.

2)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한 경우가 79.7%이다.

3)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속에 신체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매 맞음으로 고쳐지지도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4)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 아동학대의 85%이상이 ‘가정 내 발생’하였으며, 피해아동의 70%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보고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 학대피해아동의 87.4%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학대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6)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7) '이 정도가 아동학대?' 라는 생각

■ 연쇄살인범 유영철, 김길태 등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한 결과 66.7%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불화 등 부모문제로 고통 받았다.' 고 보고하였다.

■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에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사회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5. 바람직한 훈육의 구체적 방법

가. 정중한 요청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만으로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고, 아동이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나. 나 - 전달법

- 정중한 요청으로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이용
-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표현하면 효과적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다. 보상

- 보상이란? - 어떤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따위를 고취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이나 칭찬
- 보상의 유형 - 사회적 보상(미소, 안아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활동적 보상(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등), 물질적 보상(장난감, 아이스크림, 책 등)

■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보상이 더 효과적임

라. 논리적 결과

- 문제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용
-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함

6.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 발견

- 아동학대 증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바르게 조치하기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112**
 보건복지원 센터 **129** 안전신고센터 **119**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신고지역 인적사항 또는 신고현황을 이후에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협력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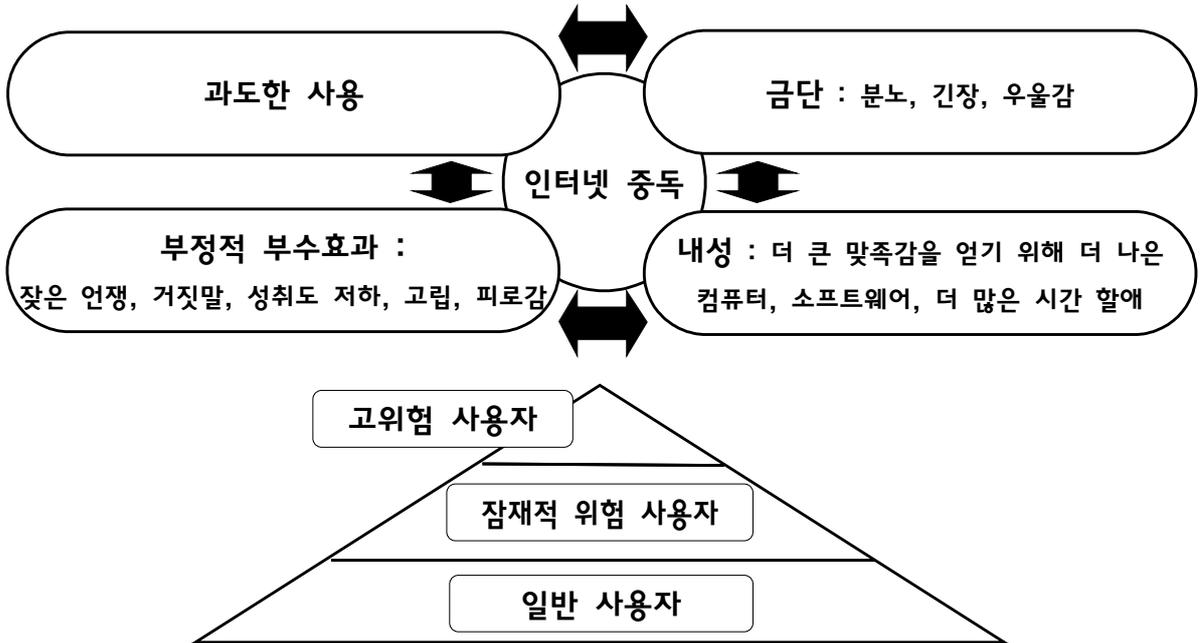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 모니터링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 관찰하기

신고지역 인적사항 또는 신고현황을 이후에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인터넷 중독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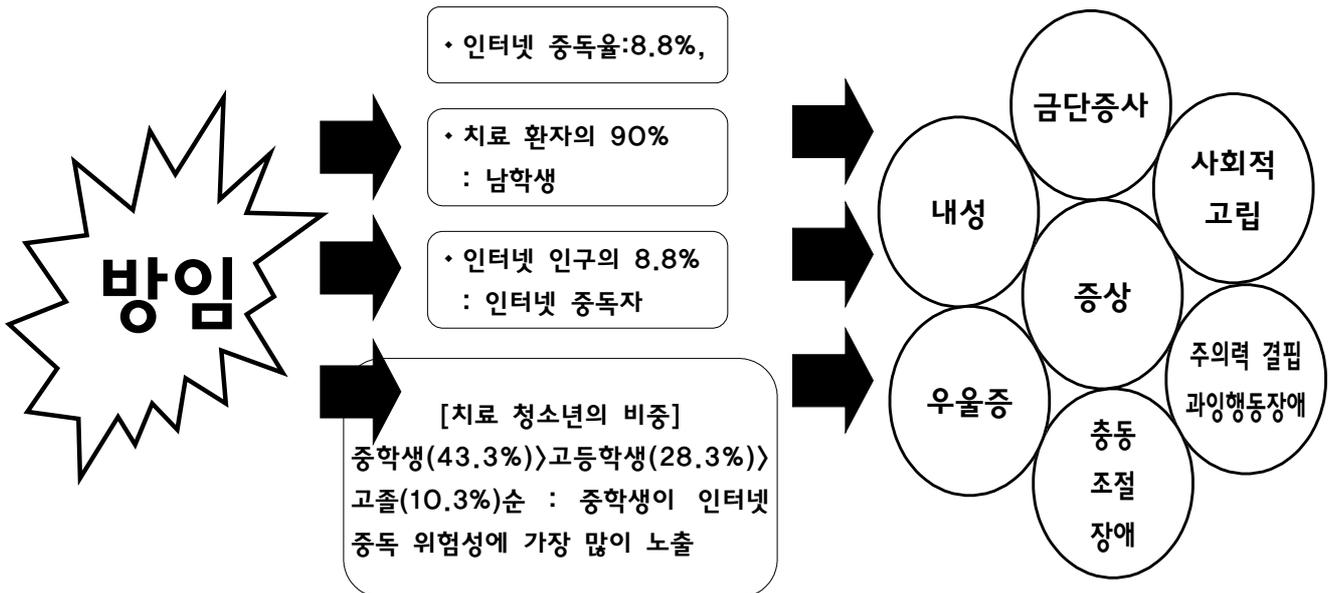
☞ 인터넷 중독:1996년 Goldberg가 처음 사용

〈인터넷 중독의 4요소(Block, 2008)〉



☞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 에듀넷 : www.edunet.net의 정보통신윤리교육
- 스마트심센터 : www.iapc.or.kr
- 배움나라 : www.estudy.or.kr의 특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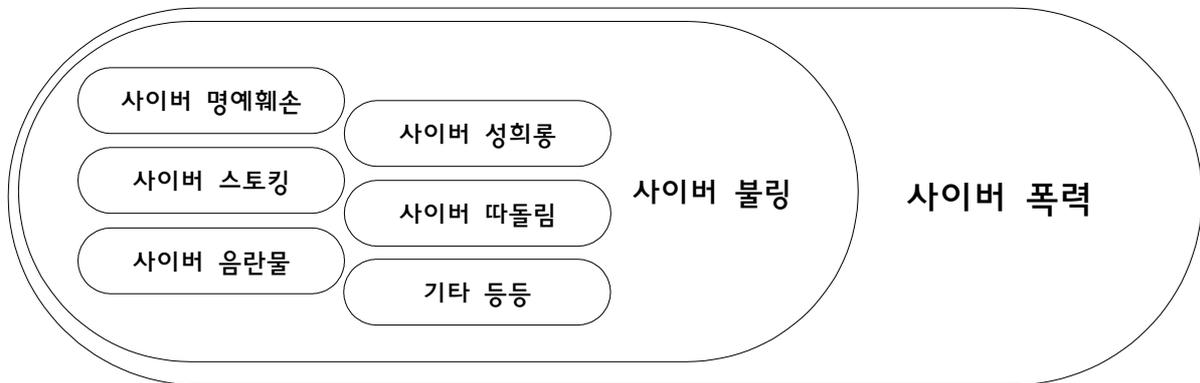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박종현 외 2인, 2005).

- 2012년 3월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개정.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개념이 법률상의 용어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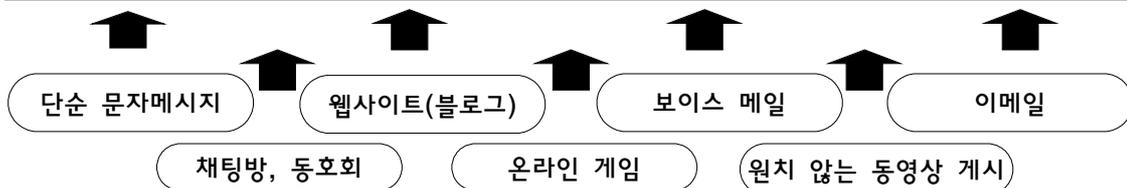
2. 사이버 폭력의 범주



3. 사이버 불링

- 불링(bullying) : 특정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

-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 이메일, 메신저, SNS, 휴대전화, 인터넷 게시판과 동호회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행해지는 불링 행위”



수단과 장소는 달라지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시금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의 범주들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원치 않는 음란물을 억지로 보게 하는 행위, 외모나 신체적 특징 등을 소재로 삼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희롱 행위 등은 명백한 폭력 범죄이다. 이런 행위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면 사이버 폭력 범죄가 되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면 사이버 불링 행위가 된다.



자기 스스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당신은 레알 스마터 (Smarter)!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으로
잘못 성장된 자신의 스펙(status)은
초기화가 안됩니다**

-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개념 충만한 센스를 보여주세요
 On ☞ 목적에 맞게! 가치있게
 Off ☞ 수업시간에! 또는 가족과 함께 할 때
- 메세지 답장이 늦게와도 집착하지 않는 당신! So Cooooooooo~!
- 당신에게 '의심스러운 어플 다운금지' 퀘스트가 주어졌습니다.
- 스마트폰 하면 스트레스 풀리는거 같지?! 그건 웨이크(fake)!
진정한 액션이 필요해
- 너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알아
- 온라인 퀘스트 때문에 오프라인 퀘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당신은 가장 소중한니께
-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마트미디어 중독 테스트를 해보세요

m.iapc.or.kr

**우리가족이 공감하는
나의 스마트 매너!** 👍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 : 대표전화 1599-007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미디어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습관은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집니다

-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자제해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규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미디어를 끌 때에는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지하는 것은 자녀의 조절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분노감을 느끼게 하거나 스마트미디어를 더 갈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스마트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을 점검해 봅니다
어플은 목적별로 두 개 정도만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필요한 어플은 정리하도록 자녀와 이야기해 보세요
-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는 어떤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현실공간에 잘 적응하는 것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의 시작입니다
- 스마트미디어 사용 이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즐깁니다

부모님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습관!
자녀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
대표전화 1599-0075 / m.iapc.or.kr



미래창조과학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